

# 서울신학대학교 해외유학장학생 선발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 (이하“본대학교”이라 한다)에서 지원하는 해외 유학장학생선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자격)** 본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해외유학장학생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석사과정은 대학 졸업예정자, 박사과정은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.

1. 본대학교 및 대학원 전과정 성적평균평점 4.00이상인자(4.5기준)
2.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**제3조 (구비서류)** 유학희망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해외유학장학생응시원서(소정양식) 1부.
2. 학과장 및 대학원장 추천서(소정양식) 1부.
3. 본대학교 및 대학원 전과정 성적증명서 각1부.
4. 유학대학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1부. (추후제출가능.)
5. 해당유학국 언어능력고사 성적이 수준 이상인 자

**제4조 (선발방법)** 유학생의 선발은 본대학교에서 주관하며 학교성적, 선발전 형성적 및 적성여부를 종합검토하여 총장의 재가를 얻어 확정 한다.

**제5조 (선발전형)** 1. 유학생 선발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의하며, 선발인원, 출제 방법 및 시험시간 등은 장학위원장이 정하여 게시한다.

2.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은 장학위원장이 주관하며 유학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한다.

**제6조 (유학비용)** 유학생에게는 유학기간동안에 본대학교에서 해외유학생장학금으로 매년 일정액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를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.

1. 장학금수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2. 유학대학에서 각종장학금을 수혜받을 경우에는 본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유학장학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3. 유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졸업후 1년이내에 유학대학에 입학하여야 본대학교에서 유학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.

**제7조 (유학생의 의무)** 유학생은 유학기간중에 매 학기 성적증명서 혹은 매년 지도교수의 평가서를 장학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총장에게 이를 보고한다.

**제8조 (유학장학금지급 취소)** 유학생이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또는 정규 학생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유학생으로서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유학장학금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.

**제9조 (벌칙)** 제10조에 따라 유학장학금이 취소된 자 또는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본 대학교에서 부담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
**제10조 (보칙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 (제정 및 개정)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의하여 교무위원회 인준을 얻어야 한다.

제2조 (시행) 이 규정은 2000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